

선 람	기 관 의 장

제991호 2017. 10. 27.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 119호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 12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8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 826호 제19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11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7 - 119호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254-1번지의 개간사업 시행을 농어촌 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0. 20.

삼 척 시 장

1. 사 업 명 :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개간)
2.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시 **구 **로 *길 ** ***단지 ***동 ***호
 - 성 명 : 이 * *
3. 사업내용
 - 위 치 :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254-1
 - 지 목 : 임야
 - 지 적 : 284㎡
 - 승인면적 : 224㎡
 - 개간의 용도 : 개전
 -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9. 7. 31. 까지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17-6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서

사업시행자	성명	이**		생년월일	5*****-1*****	
	주소	서울시 **구 **로 *길 ** **단지 ***동 ***호				
개간장소	시	읍·면		리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개간의용도	개전					
승인면적 (변경)	지번	지목	지적	승인면적	※ 토지 대가	-
	254-1	임야	284㎡	235㎡ 224㎡		
지정착수시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비예정액	금1,110,000원(금일백십일만원) 금1,074,000원(금일백만칠만사천원)					
공사의준공	2019. 07. 31					
승인조건	불임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2017년 10월 20일

삼척시장 (인)


비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 승인 면적 (변경)	토지 대 가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	금액	주소	성명	
삼척	신기	고무릉	254-1	임야	284㎡	235㎡ 224㎡	-	-	-	-	-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을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승인조건

1.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착수(공) 신고후 사업에 착수하시고, 착수(공) 신고서 제출시 사진(착공전)을 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후 준공계 제출시에도 사진(착공전, 공사중, 완공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개간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인가일, 인가번호, 준공예정일 및 개간인가를 받은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4. 토지 경계 및 토지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인근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과의 사전 협의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공사착수에 따른 토사유출등으로 연접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사유출 방지시설, 침사지, 배수시설 등의 사전 재해방지시설 설치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들은 개별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6. 사업중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즉시 사업을 중지하고 우리시에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7. 허가가간내 목적사업 완료한 경우 및 허가가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전용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공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복구설계서를 산림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단 복구할 대상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허가가간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전용된 산지의 복구공사를 위한 복구설계서가 산림과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사업 완료 후 관계법에 의하여 지적 및 공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산림복지과 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협의내역 및 조건

1. 협의내역

협의번호	소재지			협의사항			복구비예치(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수허가자
	읍면리	지번	지적	면적	용도	기간			
협의 17-48호	신기 고무릉	254-1임	284㎡	235㎡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개선)	2017.07.06. ~ 2019.07.30.	면제(660㎡미만)	100%면제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 규정	이**
변경 17-151호	신기 고무릉	254-1임	284	224 감11㎡	개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개선)	2017.07.06. ~ 2019.07.30.	-	-	이**

※금회 변경사유 : 당초 개선 목적의 산지전용협의 면적외 잔여면적(석축 및 사실상 구거형태)이 최소분할 면적(60㎡)이하로, 분할 가능한 면적내로 잔여면적 조정됨)

2. 협의조건

○ 산지전용 구역경계 표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사업 착수로 인한 연접토지 피해를 방지하고, 편입구역에 대한 경계표시는 백색페인트(수목등의 고정물에 폭 10cm이상 5m이내 간격으로 표시, 고정물이 없을 경우 깃발 등으로 표시)로 명확히 하여 누구나 분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중에 경계 표시가 망실되거나 퇴색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

○ 산지관리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 복구공사 착수전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기한내 미제출시 과태료(25만원) 부과]

○ 벌채목 중 매각하지 않는 벌채목은 지역의 저소득가구, 농가, 또는 지역내 필요로 하는 곳에 땀감, 톱밥 등으로 무상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구역 경계를 침범하거나 상기의 조건을 미이행하여 허가취소, 작업중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산지 경계의 침범 등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됨을 유의하여 작업인부, 장비기사 등 공사관계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은 복구계획서와 복구설계서에 포함된 공중·공법 등으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복구공사 착수하여야 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별표6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시행

-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추진토록 하고, 이 경우 수직높이 5m(옹벽포함)마다 1m이상의 소단을 조성하여야 하며, 최초 소단의 높이는 2m이하로 하고, 옹벽의 첨단부 폭은 소단폭에 합산되지 아니함.

-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대책 및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을 위하여 보호공 및 녹화공법 등 자연친화적인 복구대책을 수립 후 사업시행

○ 본 사업지와 연결하여 있는 토지(인접 주택지, 도로)등에 토사유출,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시설(토사유출방지책, 방진망 등) 설치

○ 재해예방시설은 사전에 설치하여 주변지역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 본 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 사업수행 중 본 산지에서 불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작업인부들의 라이터, 성냥, 담뱃불, 용접불뚝 등 관리 철저)

○ 본 사업장에 산림관련법에 의한 공무수행 등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입을 원할 경우 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현장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부지내 포함되는 모든 토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개발행위허가 등)를 받은 후 산지전용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16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 까지 발생하지 아니함.

○ 금회 허가사항은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면적별 내역에 한하며, 면적의 증감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전 변경허가 절차 이행. 끝.

삼척시 고시 제2017 - 12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 10. 27.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4519 (등봉동) 외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0.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등봉동 211-2	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4519 (등봉동)	20171027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30-1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중앙로 8-7	20171027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경, 위치 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753-10	강원도 삼척시 교동로 1길 15-9 (교동)	20171027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활용(교동로분기)	
4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0	강원도 삼척시 자원길 46 (자원동)	20171027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55-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수릉길 17-8	20171027	건물신축	20170901	지명(수릉)활용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55-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수릉길 19	20171027	건물신축	20170901	지명(수릉)활용	
7		이	하	역	백		
8							
9							
10							
11							
12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고시일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등봉동 211-2	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4519 (등봉동)	20171027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30-1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중앙로 8-7	20171027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경, 위치 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753-10	강원도 삼척시 교동로 1길 15-9 (교동)	20171027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활용(교동로분기)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0	강원도 삼척시 자원길 46 (자원동)	20171027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55-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수릉길 17-8	20171027	건물신축	20170901	지명(수릉)활용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55-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수릉길 19	20171027	건물신축	20170901	지명(수릉)활용		

삼척시 공고 제2017-826호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9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6.

삼척시장

제19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1.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삼척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너지전략실)
4.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5.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총무과)
6. 삼척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7.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8.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사회복지과)
9.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